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90
----------	------

제출년월일 : 2014.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사유

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해당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목규정 정비(안 제2조)

나.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공탁규정 삭제(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소득세

제15조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본문 중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를 “법 제7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세목) ① (생략) ②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지방소득세(소득분) 7. (생략) ③~④ (생략)</p> <p>제15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 거나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 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 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 1.~5. (현행과 같음) 6. 지방소득세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 ----- -----법 제72조에 따라 -- -----. <단서삭제></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p>□ 「지방세기본법」</p> <p>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재정수반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목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임에 따라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

4. 작 성 자

안전행정국 세정과장 정 철 환